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12.7.)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복지정책과]	1
2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 과]	5
3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12
4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17
5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24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3. 11. 28.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3. 11. 28.

2. 제안이유

- 현행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보호관찰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시켜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변경함

나. 제1조 목적에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다.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등’으로 변경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 다. 합 의: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24.~11.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정하던 것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1. 28.

2. 제안이유

-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민간부문의 의견청취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6조·제14조)
- 나.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함
 - 1) 설치·기능을 정함(안 제8조)
 - 2) 구성·임기·해축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3) 회의·운영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130조
-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1. 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서 일부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하여 기능,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1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2)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 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1. 2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1. 28.

2. 제안이유

- 경상남도교육청 쇄신안에 따라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1조~제4조)
 - 1)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행복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16.~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후 쇄신안을 확정하고, 사업명을 행복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다.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9.] [경상남도조례 제5007호, 2021. 7. 29., 제정]

경상남도교육청(학교혁신과), 055-268-15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학교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7조(경남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내 시·군에 경남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남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과 주민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행복마을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1. 28.

2. 제안이유

-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체적이고 변경 가능한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
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 1)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 나.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2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19.~11. 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에서 변경이 가능한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세부 시상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안 제2조제6호의 “이노비즈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정비하였음.
- 덧붙여, 법 개정과 법제처의 법령기준 등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의3.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

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P112

한 단어로 굳어진 용어는 가운데점 없이 붙여 쓴다.

국·내외 ⇒ 국내외 신·구 ⇒ 신구

□ 현행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1. 탁월한 지도력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시설투자,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수출증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7.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근로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2명 이하로 한다.

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노사화합,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 ③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공적 증거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④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23-0059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9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1. 2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3. 11. 28.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①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정한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하고, 그중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외 구역의 일부 공유지와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사업
- 위치 :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 / 4년
- 사업비 : 26,613백만원(국 13,127, 도 1.8, 군 13,484.2)
(용역비 1,128, 부지매입비 16,15, 공사비 23,870)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 32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 조성면적 : 43필지, 38,930m²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6필지, 14,898m² / 첨부1 참조

다. 처분(교환)재산 세부내역 : 8필지, 3,660m² / 첨부2 참조

라. 추진경과

- 2023. 2. 13. : 지역활력타운 공모지침 시달
- 2023. 4. 10. : 경상남도 평가위원회(도 신청대상 선정 시군 : 거창, 산청, 사천)
- 2023. 4. 17. : 국토교통부 방문 사업(안) 설명
- 2023. 4. 26. : 공모 신청서 제출
- 2023. 5. 16. : 통합선정위원회 현장점검(평가)
- 2023. 6. 2. : 공모 선정(전국 7개소, 도내 유일
- 거창, 인제, 괴산, 예산, 청도, 남원, 담양
- 2023. 7. 12. : 자문건축가(임지환 동윤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
- 2023. 9. 15. : 지역개발계획(변경) 안 제출

마. 향후계획

- 2023. 11. : 중앙 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2023. 12. : 지역개발계획(변경) 승인
- 2024. 12.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2025. 3. : 공사 착공
- 2027. 12. : 사업 완료

바. 기대효과

- 사업대상지 내 거창중앙교회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은퇴자들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안정된 정착과 지역 사회 활력 및 발전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3 참조

첨부1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16			18,086	14,898	338,548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1206	도	629	234	2,878	2024. 12.	지역활력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국(기재부)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산9	임	198	198	895			박*준
취득	토지	거창읍 정장리 917-14	과	5,424	5,424	111,734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11-1	임	1,901	1,901	38,020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11-3	임	1,388	225	11,677			김*술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10	묘	188	188	7,068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16	전	294	62	1,395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4	전	257	94	3,666			정*성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5	전	392	47	4,413			김*규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0	대	496	481	31,794			하*선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1	전	41	41	2,033			김*규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5	묘	1,087	990	8,583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6	전	1,430	1,430	33,462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57	전	309	51	1,244			중앙교회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23	대	524	4	306			유*분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422-43	전	3,528	3,528	79,380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지 교환	중앙교회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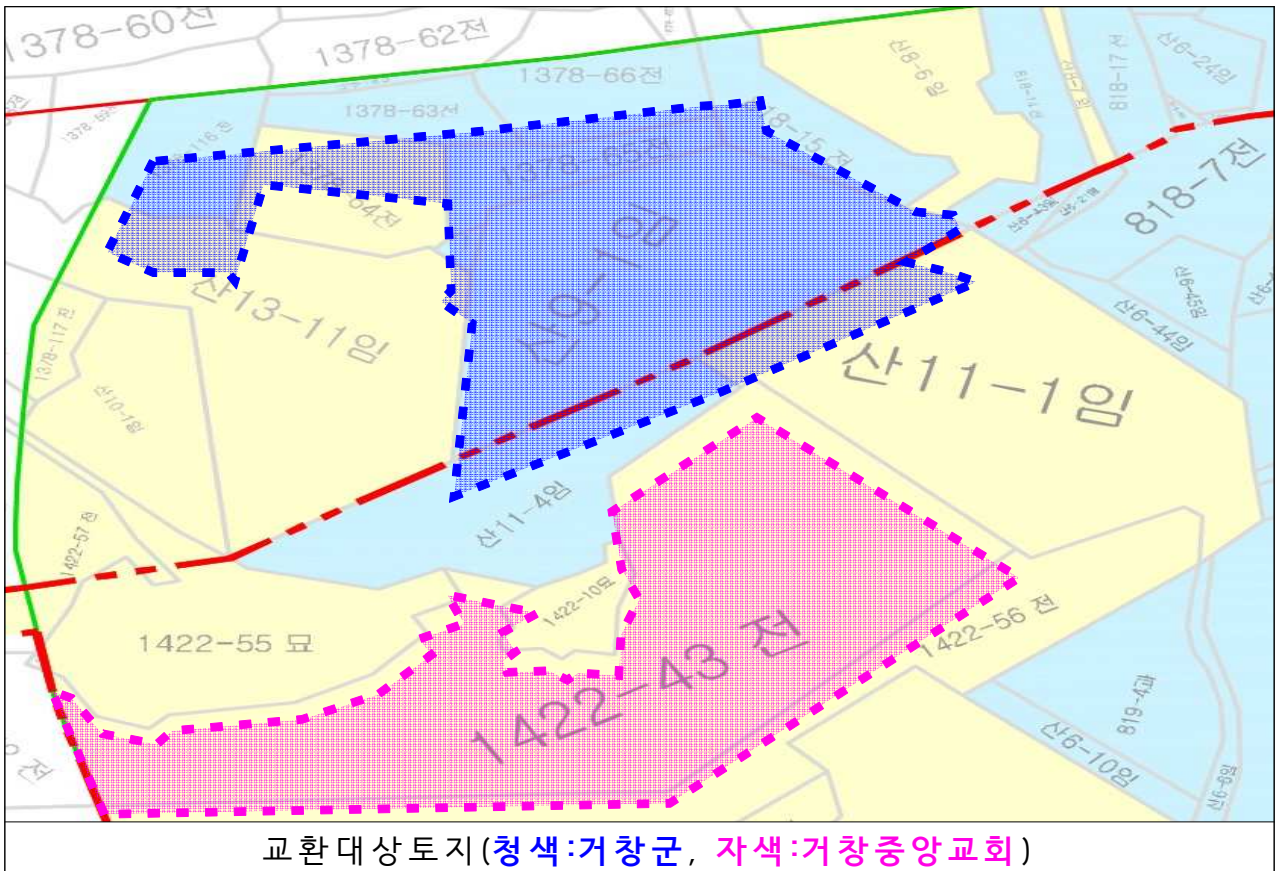
첨부2

처분(교환)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처분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8필지			3,660	3,660	89,147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산 9-1	임	1,785	1,785	35,700	2024. 12.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지 교환	거창군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818-15	전	381	381	13,183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3	전	261	261	6,499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5	전	292	292	7,271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6	전	539	539	13,421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68	전	25	25	663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116	전	333	333	11,222			
처분(교환)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78-118	전	44	44	1,188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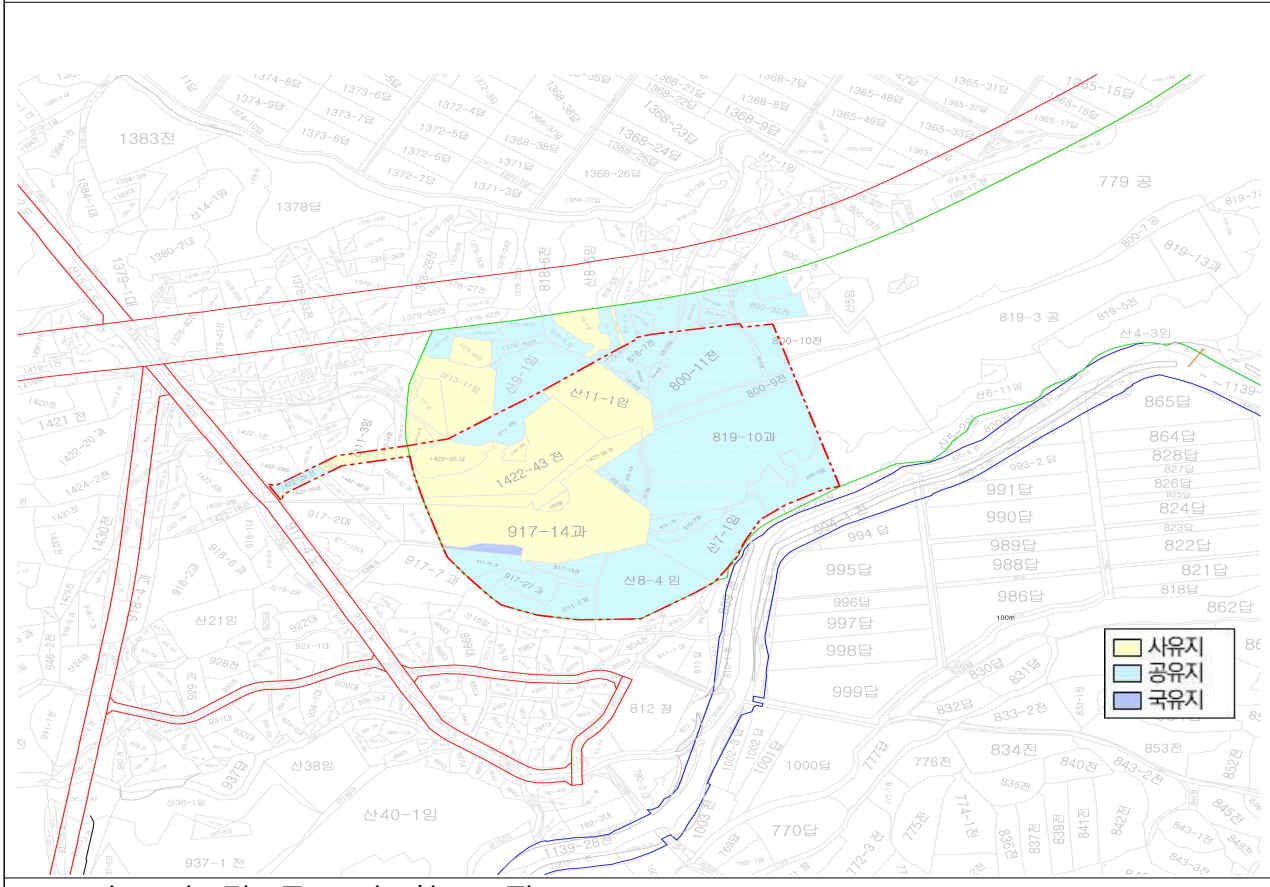
※ 교환대상 재산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22-43\(전 / 3,528㎡\)](#)



첨부3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9번지 일원



○ 사유지 및 국유지 확보 필요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일부 사유지는 교환 취득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중앙교회 소유의 대평리 1422-43번지, 3,528㎡이며, 우리군 소유의 토지는 거창읍 대평리 산 9-1번지 등 8필지 3,660㎡이며,
- 기준가격을 살펴보면 중앙교회는 79,380천원이고, 우리군은 89,147천원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교환대상 부지가 본 사업대상지 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고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②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면소재지 내 각종 행사 공간 및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사업추진위원회) 건의사항이 있어 지역민의 삶 질 향상 목적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 정비하여 다목적마당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목적마당 조성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3, 1488-4번지
- 사업기간 : 2023. 10. ~ 2024. 10. / 1년간
- 사업내용 : 다목적마당 조성
 - 행사공간, 야외공연장, 운동·레포츠 시설, 주민 쉼터 등
- 사업비 : 1,900백만원
- 조성면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555백만원) 활용 및 군비 등 추가사업비 확보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¹⁾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면적(m ²)				
계				84,455			
취득	토지	북상면 갈계리 1488-3번지	2,579	49,001	2023 ~ 2024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다목적마당 조성	
		북상면 갈계리 1488-4번지	1,866	35,454			

※ ¹⁾기준가격 적용 : 토 지 → 현.기준 공시지가
지 장 물 → 지장수목 등 미보상 조건 토지 매입

다. 추진경과

- 2018. 5. : 북상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1. 4. : 북상면 농촌중심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 2021. 5. ~ 2023.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라. 향후계획

- 2023. 11. : 경남도 집행잔액 재투자계획 협의 및 승인
- 2023. 12. : 편입물건 보상협의
- 2024. 이후 : 경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다목적마당 조성
공사 추진

마. 기대효과

- 면 행사 추진에 따른 공간 임대비용 절감
- 부족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민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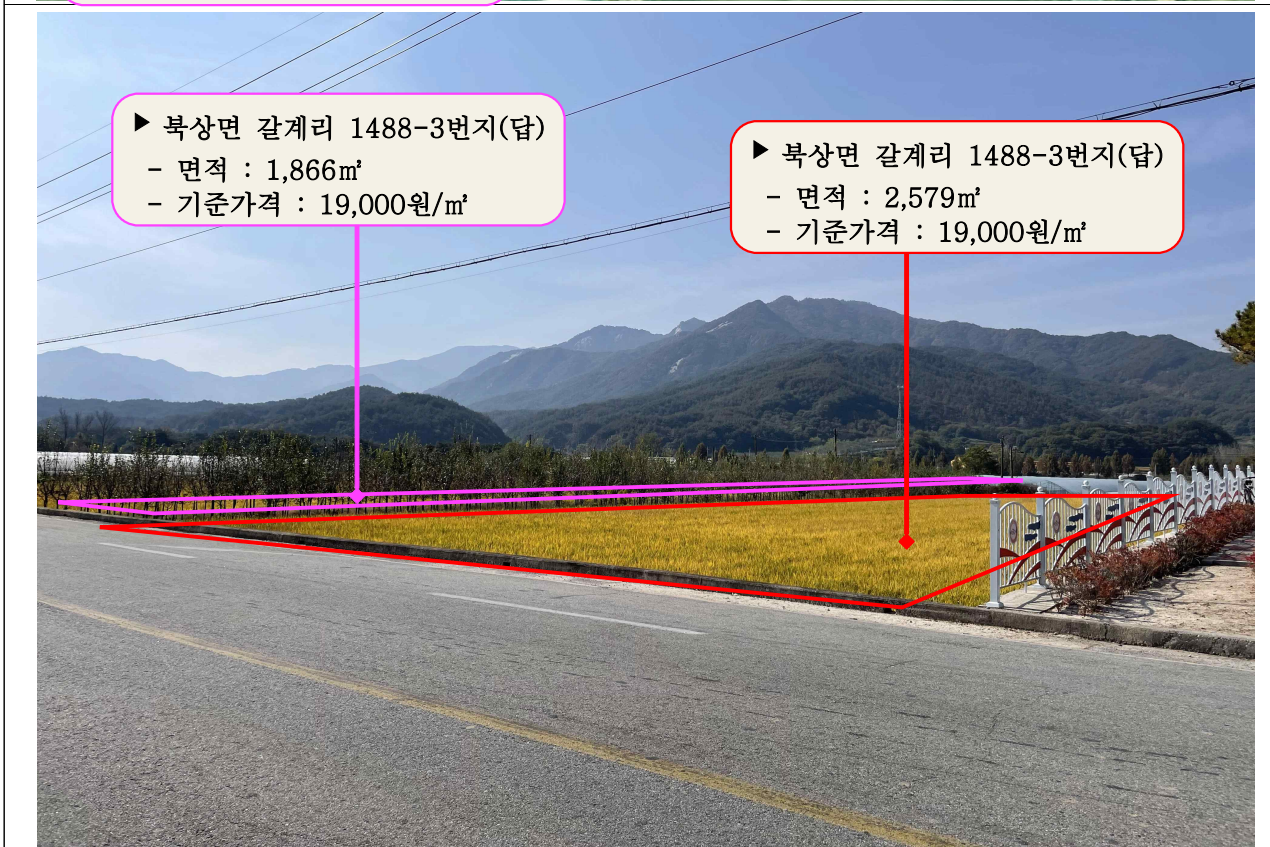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 참조

첨부1

위치도 및 지적현황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북상면 다목적마당 부지 조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취득재산은 북상면 갈계리 1488-3등 2필지, 4,445m²이며, 기준가격은 8,445천 5백만원이나 실제 매입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예상됨.
-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부지 매입비는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555백만원 중 반납대상인 국·도비 157백만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임.
- 농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계획관리)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2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됨.
- 면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마당 조성이 필요하긴 하나, 소재지 내 갈계숲, 학교 운동장과 최근 준공된 게이트볼장 등을 활용하는 등 타 면지역과의 형평성 등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면 행사 시 공간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의 71%(1,345백만원)를 준비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추후 행정절차 이행기간 내 공사비 확보를 위한 타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거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③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복지회관 등 3건 처분)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및 주민이용편의 제공 목적을 위해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처분(철거)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사업명 :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 246-5번지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사업내용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문화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 사업비 : 4,000백만원 (군 2,640, 도 860, 군 500)

나.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2)기준가격 (천원)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시설명	면적 (㎡)				
		소재지					
계				178,223			
처분	건축물	복지회관	(2층) 600.25	147,420	2024 ~ 2025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창고	(1층) 144.00	17,568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지역아동센터	(1층) 81.70	13,235					
마리면 말흘리 246-5번지							

※ 2)기준가격 적용 : 건축물 → 가감정 결과

다. 추진경과

- 2018. 5. : 북상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18. 2. ~ : 군수님 연두 순방 시,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의
- 2018. 9. ~ 2022. 4. :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완료)
 - 3필지, A=7,395m² (부지매입비 454백만원)
- 2020. 3. ~ 5. : “마리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실시 ⇒ 3)안전등급 B
-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023. 5. : “마리면 복지회관 정밀안전점검”실시 ⇒ 4)안전등급 C
- 2023. 6. ~ 2024. 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사업 착수설명회 및 주민위원회 협의 7회, 선진지 견학 1회 추진

※ 3) 안전등급 B : 구조적 결함이 없는 양호한 건축물

4) 안전등급 C : 주요부재 내구성 및 기능 저하에 따른 보수 또는 보강 필요

라. 문제점

- 문화자치센터(농촌협약 사업) + 행정복지센터(군 자체사업)
 - 복합화 계획수립 관련 사업부지 내, 위치한 기존 건물에 대한 처리계획 미확정
 - ⇒ 금회 사업추진 시 반영될 도입시설과 그 규모의 산정 등을 위하여 기존건물에 대한 처리계획(존치여부)에 대한 조속한 확정이 요구됨

마. 기존 건물 처리(존치여부)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안)

시 설 명	존치 여부	담당부서 검토	비고
면사무소	존치	▶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건물 존치 ⇒ 향후 행정(부속)시설 활용 예정	
복지회관	철거	▶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과,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누수 등으로	

시 설 명	존치 여부	담당부서 검토	비고
		<p>건물의 내구성. 기능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 보수가 필요</p> <p>※ 개략 보수비 : 40백만원 + 연간 3백만원 정도</p> <p>▶ 기존 건물 실별(건강증진실, 경로당, 강당) 면적 협소로 인한 현재 주민 이용불편 초래</p> <p>▶ 금회 계획된 문화자치센터와 공간 및 프로그램 중복</p> <p>▶ 면사무소 ↔ 계동마을 접속도로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지속 발생</p> <p>▶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47백만원</p> <p>⇒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 신축 반영</p>	
창 고	철거	<p>▶ 건물 노후 및 경관 저해,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단지 배치계획 지장초래(저축)로 인한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철거</p> <p>▶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8백만원</p> <p>⇒ 기존 건물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군자체) 반영</p>	
아동센터	철거	<p>▶ 건물 노후 및 경관 저해, 초등생 안전사고 우려</p> <p>▶ 면사무소 ↔ 계동마을 접속도로부 시거확보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지속 발생</p> <p>▶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13백만원</p> <p>⇒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 신축 반영</p>	

바. 향후계획

- 2023. 11. ~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23. 1. ~ 2024. 2.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경남도 승인 및 고시
- 2024. 3. ~ 10.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 2024. 10.이후 : 공사 착공 및 준공(장기계속공사)

사.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복합화 추진에 주민이용성 확보
-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
- 사고위험 교차로 시거 확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건축물 현황 및 적정시설 규모 검토 : 첨부 참조

첨부1

사업부지 내 건물현황 및 처리계획



① 마리면사무소【사용승인 : 1988. 12. 31.】

- 1종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2층)

A=600.25㎡

- 1층 : 면사무소
- 2층 : 면장실, 회의실

⇒ 처리계획 : 건물 존치(행정 부속시설 등 활용)

② 마리복지회관【사용승인 : 1988. 12. 31.】

- 1종근린생활시설(지상2층) A=453.15㎡

- 1층 : 노인회관, 체력증진실
- 2층 : 다목적실, 회의실

⇒ 처리계획 :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농촌 협약 사업) 반영

③ 마리면 창고【사용승인 : 2011. 9. 26.】

- 창고시설(지상1층) A=144.00㎡

⇒ 처리계획 : 철거 후 행정복지센터(군 자체 사업) 반영

④ 마리지역아동센터【사용승인 : 1988. 1. 21.】

- 1종근린생활시설(지상1층) A=81.7㎡
- 2011년 (면대본부→지역아동센터 전환)
- 학생정원 19명 중 17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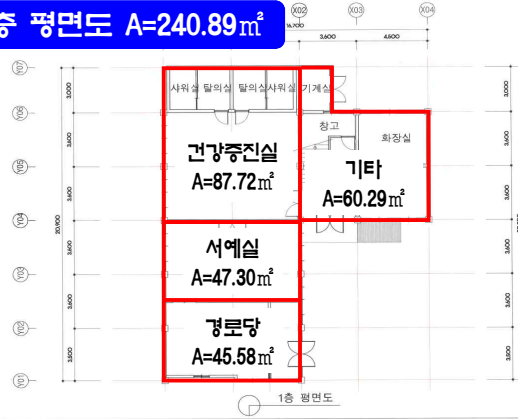
⇒ 처리계획 : 철거 후 문화자치센터(농촌 협약 사업) 반영

첨부2

층별 평면도 및 적정시설 규모(안)

층별 건축평면도 (2층, 연면적 A=453.15㎡)

1층 평면도 A=240.89㎡



2층 평면도 A=212.26㎡



적정시설 규모 검토(안)

▸ 이용현황(주민수요) 및 적정규모 검토(안)

- 기존 마리복지회관 시설협소로 인한 주민참여도 및 이용성 저하

구 분		건강증진실	경로당	강당
현재	이용자	30인	10인	120인
	규모	87.72㎡	46.44㎡	153.94㎡
수요	최대이용	150인	50인	200인
	일평균이용	(추정) 50인	(추정) 30인	-
	최대규모	240.90㎡	112.00㎡	321.30㎡
	적정규모(안)	50인 120.00㎡	25인 80.00㎡	200인 280.00㎡
복상	최대이용	100인	40인	250인
	일평균이용	50인	30인	-
	규모	136.26㎡	96.25㎡	330.00㎡

※ 최대규모 산정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적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 시설 규모결정 기준

※ 적정규모 산정(안) : 복상면 행정복지센터 기준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해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 처분 재산(건물의 멸실)의 면적은 총 825.95m²로 복지회관 600.25m², 창고 144m², 지역아동센터 81.70m²이며, 기준가격은 178,223천원 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이상, 기준면적 2천m²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처분(건물의 멸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임